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3495 |
|----------|------|

2026년 3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9일, 성흠제 의원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일자: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6년 3월 5일 상정,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성흠제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은 어린이의 놀 권리와 쉼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으로 놀이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 단계까지 고려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놀이환경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과정에서 의견 반영, 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임.
- 이에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사업 추진·운영 과정에 관한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놀이환경에서 놀이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에 기후환경 변화 고려 및 놀이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 2)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3)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6호)하고,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재발 방지 조치 강구를 명시(안 제8조제3항)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도시공원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놀이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견 없음.
- 다만, 안 제5조제7호1) 내용 중 ‘시민 의견 수렴’은 ‘지역주민과 지속적 소통’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제5조제2호2)와 통합하고, 안 제8조제3항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안 제19조제3항은 놀이환경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개소별 설치 위치에 따라 구성 요소와 주변 여건이 달라 결과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안 제5조제7호) 놀이시설 이용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든다.

3.~5. (생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요지 :

- 현행 조례와 유사한 개정 사항은 별도 조항 신설 없이 현행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놀이환경 평가 결과의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개소별 설치 환경에 따라 객관적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3495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와 유사한 개정 사항은 별도 조항 신설 없이 현행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놀이환경 평가 결과의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개소별 설치 환경에 따라 객관적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시민 의견 수렴과 그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항 신설 없이 현행 조례에 통합 규정함(안 제5조제7호).
- 놀이환경 평가 결과의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호 중 “만든다”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안전사고의”를 “안전사고 예방 및”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든다.</p> <p>3. ~ 5.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u>만든다</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u></p> <p>7. <u>놀이시설 이용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u></p>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 ----- -- <u>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u></p> <p>3. ~ 5. (개정안과 같음)</p> <p>6. (개정안과 같음)</p> <p><u><삭 제></u></p> |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생략)

<신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안전사고 예방 및 -----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①·② (생략)

<신설>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①·② (개정안과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만든다”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u>만든다</u>.</p> <p>3. ~ 5. (생 략)</p> <p><u><신 설></u></p>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u></p> |
| <p>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생 략)</p> <p><u><신 설></u></p> | <p>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u></p> |